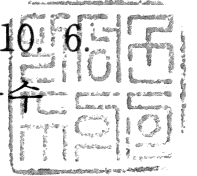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6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10. 6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회계·기금 간 여유자금을 예탁 및 예수할 수 근거(통합계정)를 신설하는 등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‘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’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(안 제2조)
- 다.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3조)
- 라.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4조)
- 마.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, 이자, 운용심의, 회계공무원(안 제5조 ~ 제8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지방재정법 제9조의2
- (2)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- (2) 입법예고(2020. 8. 31. ~ 9. 21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달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②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하여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5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3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직전 회계연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5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3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3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2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4.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의 각 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1.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 및 증축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
5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%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제4항제5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자) ① 군수는 국·공채 이자율 수준,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·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4.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5.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

제8조(회계공무원)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
2. 기금출납원 : 통합기금 담당 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되,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금이체) 개정 전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조성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하되, 금융기관 정기예금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이체는 그 계좌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-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-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 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 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 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-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-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 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